

『畝忠錄』을 통해 본 寒洲 李震相의 國政改革論

우인수*

【 차례 】

1. 머리말
2. 處士로서의 삶과 『畝忠錄』의 저술
 - 1) 시대적 상황과 처사로서의 현실참여
 - 2) 『畝忠錄』의 체제와 구성
3. 國政改革論의 내용과 의미
 - 1) 官制 改革案
 - 2) 教育 및 科擧制 改革案
 - 3) 軍政 改革案
 - 4) 賦稅制 改革案
 - 5) 吏胥制 改革案
4. 맺음말

【 국문초록 】

한주 이진상은 조선말 영남지역 유학계의 거두였다. 이항의 학설을 단순히 묵수하며 조술하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새로운 시각을 보탠 것은 큰 학자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한주학파라고 불릴 정도의 많은 제자들이 그의 문하에서 배출되면서 영남 유림의 대표적인 존재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주 이진상과 한주학파는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역사학과 철학계에서 이루어졌는데, 연구의 경향은 크게 그의 새로운 철학적 시각인 심즉리 설을 비롯한 성리설에 대한 연구, 한주학파의 학통 및 활동과 관련한 연구, 이진상의 사회개혁안과 관련한 연구 등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이진상과 한주학파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이해가 심화되었고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구가 거의 학통이나 사상적인 측면에 집중되었고, 그의 정치사회적인 활동 측면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점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묘총록』 전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이진상의 국정개혁론의 전모를 규명하고, 그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는 유교 경전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자신의 경험을 참고하여 개혁안을 구상하였다. 그의 개혁안은 토지제도와 신분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안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만큼 이상에 치우치지 않고 되도록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관제 개혁론과 관련하여 그가 강조한 것은 필요 없는 관료의 수를 줄임으로써 국가 제정의 지출을 줄이려는 것이었다. 둘째, 교육과 과거제의 개혁에서는 공교육을 5단계로 나누어 등급별로 시행함으로써 교육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교육을 관료 선발과 연계시켜 공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셋째, 군정 관련 개혁안에서는 모든 역 부담을 사회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원칙을 세워 개혁안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넷째, 부세의 경감을 위해 그는 세금은 수확의 1/10, 지대는 수확의 3/10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지주로부터의 약간의 양보를 전제로 한 다음, 국가 세금 감소분은 은결에 대한 철저한 과세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이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서리들이 중간에서 부리는 농간을 원천적으로 막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의 개혁안은 조정에 알려지지도 못한 채 묻히고 말았고, 이후 근대적인 개혁이 수행되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빛을 발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조선 성리학의 마지막 불꽃이었으며, 시대를 고민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학자였다.

주제어 이진상, 한주학파, 묘총록, 개혁론, 국정개혁, 영남 남인, 성주

1. 머리말

한주 이진상은 조선말 영남지역 유학계의 거두였다. 그는 退溪 李滉에게

학문적 연원을 두고 그 학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용틀임을 하며 大尾를 장식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퇴계설을 단순히 묵수하며 祖述하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새로운 시각을 보탠 것은 큰 학자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寒洲學派라고 불릴 정도의 많은 제자들이 그의 문하에서 배출되면서 영남 유림의 대표적인 존재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주 이진상과 한주학파는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역사학과 철학계에서 이루어졌는데, 연구의 경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그의 새로운 철학적 시각인 심즉리 설을 비롯한 성리설에 대한 접근으로서 주로 그의 사상적 특징을 밝힌 연구들이다. 송찬식,¹⁾ 금장태,²⁾ 강대걸,³⁾ 이형성,⁴⁾ 山內弘一,⁵⁾ 이종우⁶⁾ 등의 연구가 본격적인 논고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한주학파의 학통 및 활동과 관련한 연구로서 한주학파의 학문적 연원과 사상적 특징 그리고 한주학파의 사회적 활동 등에 초점을 둔 연구가

- 1) 송찬식, 「조선조말 주리파의 인식논리 -한주 이진상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9, 1977. 송찬식, 「한주 이진상의 이기론 연구」, 『한국사학』 5, 1983.
- 2) 금장태, 「퇴계와 한주의 신개념 : 성학십도 제6 심통성정도에 관한 한주의 해석과 관련하여」, 『퇴계학보』 54, 1987. 금장태, 「퇴계학파의 학문 「21」 -한주 이진상의 성리학파 심즉리설-」, 『퇴계학보』 102, 1999.
- 3) 강대걸, 「한주 이진상의 이기설소고」, 『복악논총』 5, 1987.
- 4) 이형성, 「한주 이진상의 심성론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2, 1998. 이형성, 「이진상의 성리설에 있어서 주재성에 관한 일고찰 : 이심사심론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19, 1998. 이형성, 「이진상 철학사상연구 서설 -사상형성 배경과 저술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13, 2001. 이형성, 「이진상 성리설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사상과 문화』 15, 2002. 이형성, 「한주 이진상의 심통성정론에 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15, 2002. 이형성, 「한주 이진상의 이철학 전개와 위상」, 『한국사상과 문화』 17, 2002. 이형성, 「한주 이진상의 '이지품수'로서의 성론 고찰」, 『한국사상과 문화』 19, 2003.
- 5) 山內弘一, 「이진상의 심즉리설과 영남학파」, 『이우성정년퇴직기념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 상, 1990.
- 6) 이종우, 「이진상 심즉리설의 연원적 고찰」, 『동양철학연구』 34, 2003.

수행된 바 있다. 홍원식,⁷⁾ 이동희,⁸⁾ 권대웅,⁹⁾ 권오영,¹⁰⁾ 이종우¹¹⁾ 등의 연구가 있다. 그 외에 한주학파에 속하는 학자 개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한주학파가 부분적으로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여기서는 논급하지 않겠다.

셋째는 이진상의 사회개혁안과 관련한 연구이다. 이윤갑은 성주지역의 농민운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진상의 개혁안에 주목하여 그 요지를 네 가지로 파악 제시한 바 있고,¹²⁾ 김도형은 이진상의 부세와 관련한 개혁안을 살피는 과정에서 그 요점을 減租論으로 설명하면서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¹³⁾

이상의 연구를 통해 이진상과 한주학파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이해가 심화되었고 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구가 거의 학통이나 사상적인 측면에 집중되었고, 그의 정치사회적인 활동 측면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점이 있다. 그의 개혁론과 관련하여서는 이윤갑과 김도형에 의해 『묘충록』이 논급된 바 있으나, 필요에 따른 요점 제시나 부분적 이용에 그쳤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묘충록』 전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이진상의 국정개혁론의 전모가 규명될 수 있을

- 7) 홍원식, 「한주학파의 공자교 운동」, 『한국학논집』 26, 1999. 홍원식, 「이진상의 철학사상과 그의 후예들」, 『동양학』 29, 1999. 홍원식, 「퇴계학의 남전과 한주학파」, 『한국의 철학』 30, 2001.
- 8) 이동희, 「한주학파의 퇴계 성리학 계승」, 『한국학논집』 26, 1999.
- 9) 권대웅, 「한말 한주학파의 계몽운동」, 『대동문화연구』 38, 2001.
- 10) 권오영, 「19세기 강우학자들의 학문동향」, 『남명학연구』 11, 2001.
- 11) 이종우, 「한국유학사 분류방법으로서의 주리, 주기 개념에 관한 비판적 연구 - 이진상 학파와 전우학파의 논쟁과 관련하여-」, 『동양철학연구』 36, 2004. 이종우, 「이진상 학파와 전우학파의 지각설 논쟁」, 『동양철학연구』 37, 2004.
- 12) 이윤갑, 「19세기 후반 경상도 성주지방의 농민운동」, 『손보기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1988. 이윤갑, 「조선후기의 사회변동과 지배층의 동향」, 『한국학논집』 18, 1991. 그는 상소문을 통하여 개혁안의 내용을 크게 관료제도, 과거제도, 삼정제도, 서리의 부정방지책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바 있다.
- 13) 김도형, 「한말 일제초기의 변혁운동과 성주지방 지배층의 동향」, 『한국학논집』 18, 1991. 김도형, 「한주학파의 형성과 현실인식」, 『대동문화연구』 38, 2001.

것이고, 이는 그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제자들의 적극적인 현실 대응에 미친 그의 영향을 확인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다만 이진상과 『묘충록』이라는 개혁안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전반적인 시대상황의 파악에 미흡한 점이 있고, 당시 다른 개혁론자들의 개혁안과 충분한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본고의 한계라고 하겠다.

2. 處士로서의 삶과 『歆忠錄』의 저술

1) 시대적 상황과 처사로서의 현실참여

이진상이 살았던 19세기는 격변의 시대였다. 정치적으로는 외척가문에 의한 세도정치가 전개되면서 소수 집단에 의해 권력이 농단되는 파행을 겪고 있었다. 중앙의 정치권력에서 일찌감치 소외된 영남지역의 남인으로서의 그는 재야 지식인의 처지에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파행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도 당시 지배층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의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는 처지였다고 하겠다.

더구나 이 시기는 농민의 항쟁이 곳곳에서 일어나던 민란의 시기였다. 특히 그의 나이 45세이던 1862년(철종 13)에는 壬戌農民抗爭이 그가 살던 경상도지역을 위시하여 전국의 곳곳에서 일어난 바 있었다. 성주에 살던 그는 직접 농민항쟁을 목격하였고, 나아가 그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기도 하였다. 『묘충록』은 바로 그 고심의 과정에서 구상된 것이었다. 성주지역에서의 농민항쟁은 그 후에도 이어져 1883년의 癸未抗爭과 1894년의 東學農民戰爭으로 이어졌다.¹⁴⁾

14) 성주지역 농민항쟁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대해서는 이윤갑, 앞의 「19세기 후반 경상도

한편 대외적으로는 서구 열강들이 통상을 요구하며 충돌을 일으키던 어수선한 시기였다. 1866년 제너럴셔먼호사건과 丙寅洋擾, 1868년 南延君墓 盜掘事件, 1871년 辛未洋擾, 1876년 江華島條約 체결 등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던 혼란스런 시대였던 것이다. 그는 비록 시골에 묻혀있었지만 당시의 서구 열강들의 침략적 움직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는 당시의 외적의 침입이 예상되는 방향을 북쪽과 서쪽으로 보았다. 이는 그가 통상을 빌미로 한 서구열강의 두 차례에 걸친 침략과 러시아의 남하와 관련된 정세를 인지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그는 함경도의 安邊·文川 근처, 강원도의 歙谷 근처, 평안도의 陽德 근처, 황해도의 谷山 근처 등 네 곳에 統禦重鎮을 설치하여 將略이 있는 重臣을 파견하여 각각 천여명의 무사를 招募하여 녹을 충분히 주어 지킬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¹⁵⁾ 이는 그가 냉철하게 당시 조선의 대외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에 고민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현실 사회문제에 무심할 수 없었다. 우선 자신이 살고 있는 향촌의 현안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향촌에 있으면서 펼친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특히 농민항쟁이 스쳐 지나간 후 향촌사회의 재편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재지사족으로서의 대응이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임술농민항쟁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집권한 대원군은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일정하게 반영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물론 이는 왕권 강화와 봉건 체제의 유지에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었지만 그 주된 개혁의 대상이 수령과 양반지배층이었던 만큼 그들의 불법적인 횡포에 대한 제지는 일반 농민들의 불만 요인을 줄이는 효과도 가지고 있었다. 양반층에게까지 軍布

성주지방의 농민운동」에 자세하게 연구되어 있다.

15) 『欽忠錄』1, 疆理原, 邑等式, 附後說. (亞細亞文化社 影印 『寒洲全書』所收, 1980)

를 부과하는 戶布制의 실시나 백성을 수탈하는 전초기지 구실을 하던 書院을 거의 철폐한 것이 그러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양반층은 군포를 내는 점에서 평민층과 동일한 대상이 되면서 특권의식에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향촌에서의 양반지배층의 집결장소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던 서원이 거의 모두 철폐됨에 따라 엄청난 충격에 빠졌던 것이다. 이에 그들은 이러한 사태를 극복하고 향촌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성주에서도 양반 사족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특히 1862년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났다. 그 중심에 한주 이진상이 있었다. 철폐된 서원을 書堂으로 개칭하여 복구한다든지, 그 곳에서 대규모 講會를 개최하거나 鄉飲酒禮를 행하면서 유교적 이념으로 재무장하고 사족간의 결속을 다졌다.

1867년 50세 때 숙부인 凝窩 李源祚와 함께 檜淵書院에서 大學講會를 개최하였다. 이때는 농민들에게로 확산되고 있던 天主教를 경계하고 비판하는 집회를 겸한 것이었다. 1869년 52세에는 松川堂에서 예부터 내려오던 향약을 修理하였다. 1871년 54세에는 조정의 서원철폐령에 맞서 상소운동을 전개할 때 掌議를 맡아 상소문을 지었다. 1873년 56세에는 寒岡 鄭述를 문묘에 종사하기 위한 회의를 道東書院에서 개최한 바 있었다. 1874년 57세에는 복구된 檜淵書堂의 講長으로 있었다. 1875년 58세에는 회연서원 자리에 복원된 慕淵齋에서 대규모 論語講會를 열어 수백명이 집결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이웃고을인 창녕의 江林齋에서 향음주례를 행하고 小學講會를 열었고, 이어 고령의 鍾山齋에서도 역시 향음주례를 행하고 大學講會를 개최한 바 있었다. 1876년 59세에는 합천 伊淵齋에서 열리는 향음주례에 빈객으로 초청받아 참석하였다. 1877년 60세에는 東岡 金宇顛의 독서처였던 考槃精舍에서 洞契를 수리하고 그 서문을 쓴 바 있었다. 그리고 南泗里에서 향음주례를 열고 太極圖說講會를 개최한 바 있었다. 1878년 61세에는 고령의 종산재에서

중용강회를 열었고, 창녕의 강림재에서도 강회를 개최하였으며, 회연서당에서는 향음주례를 열고 이어 近思錄講會를 열었다. 1880년 63세에는 伊淵書堂에서 향음주례와 강회를 열었고, 고령 盤龍寺에서 論語講會를 열었으며, 松川堂에서 척사상소 모임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1881년 64세에는 고령의 館洞에서 中庸講會를 가졌고, 인근 안음의 葛川書堂에서 향음주례를 행하였다. 1882년 65세에는 고령 종산재에서 강회를 열었고, 覺山에서는 향음주례를 행하였다. 1885년 68세에는 丹山書堂에서 향음주례와 강회를 연 다음 향중의 사족들과 향약을 새롭게 정비하여 결속을 다졌는데, 이 때 副約正을 맡았다. 그리고 族人들과 합천 上谷에서 花樹會를 만들어 결속을 다지기도 하였다. 1886년 69세에는 한강 정구의 독서처였던 武屹書堂에서 향중 사족들과 계를 결성하고 그 서문을 쓴 바 있었다.¹⁶⁾

이러한 향촌에서의 활발한 활동과 함께 그는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있을 때에도 어떤 형태로든 현실에 참여하는 적극적 대응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그는 지식인으로서의 시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1857년 40세에는 청에 太平天國의 亂이 일어나 어려운 지경에 처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기회를 틈타 청에 대한 사대의 철폐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려 한 바 있었다. 1862년 45세에는 임술농민항쟁의 수습책을 묻는 조정에 올리기 위해 대책을 작성하였으나 올리지는 않은 바 있었다. 그러나 이 때부터 국정의 제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시작되어 1866년 49세 때에는 『묘충록』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대원군에 의해 전국의 대부분 서원에 대한 철폐령이 내려진 1871년 54세에는 이에 반대하는 상소 운동의 掌議를 맡아 상경 투쟁한 바 있었다. 1876년 59세 때 일본에 의해 개항을 목적으로 한 강압적인 조치가 있다는

16) 『寒洲集』 부록, 연보, 해당조 참고. (亞細亞文化社 影印 『寒洲全書』所收, 1980) 이운갑, 앞의 「19세기 후반 경상도 성주지방의 농민운동」, pp.666~667.

소식을 접하고는 곧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병을 일으키려 한 바도 있었다.

1881년 64세에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朝鮮策略』의 유포에 맞서 이에 반대하는 칙사운동에 적극 나서서 開寧道會에서 疏頭에 선임되기도 하였다. 1884년 67세에는 좁은 소매의 두루마기를 입으라는 조정의 변복령에 반대하여 禁劄에 빠져있는 深衣를 입으면서 항거하였고, 衣制論을 지어 이를 비판하기도 하였다.¹⁷⁾

이상과 같이 이진상은 국가적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일정한 자신의 의견을 일정하게 표출하였다. 비록 그의 견해가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사안마다 의견을 개진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보였던 점은 삶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현실을 대하는 적극적인 태도는 자연스럽게 그의 문도들에게도 전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보다 현실을 대하는 그 같은 적극적인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문도들에게 끼쳤을 것이다.

2) 『敵忠錄』의 체제와 구성

『묘충록』은 이진상이 49세이던 1866년(고종 3)에 작성한 것으로 옛 성현의 이상적 제도를 참작하고 당시 조선의 실정을 감안하여 구상한 국정에 관한 개혁안이다. ‘묘충’이라는 말은 송대 西山 眞德秀의 ‘畎畝寓忠情之義’를 취한 것이라고 한다.¹⁸⁾ 朱子의 致仕謝表에도 ‘東阡北陌 尙難忘畎畝之忠’이란 표현이 있으니¹⁹⁾ 이를 참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묘충’이란 ‘전원에 묻혀있으면서 다하는 충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는 이 『묘충록』을 첨부하여 조정에 올리는 개혁 상소를 작성한 바 있었는데, 실제로 상소를 올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묘충록』도 조정에까지 알려지

17) 『寒洲集』 부록, 연보, 해당조 참고.

18) 『寒洲集』 부록, 연보, 병인조(49세).

19) 『朱子大全』 85, 表, 致仕謝表.(保景文化社 影印本, 1984)

지는 못한 채 묻히게 되었다. 다만 그의 주변 지인에게는 알려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당대의 문장가이자 학자였던 李建昌이 『묘충록』의 서문을 쓴 것으로 볼 때 범상하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견장은 서문에서 이진상의 개혁안이 礪溪 柳馨遠의 개혁안에서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상에 치우치지 않고 훨씬 현실적인 면이 많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그의 개혁안의 요체는 한 나라의 부세를 균등하게 하고, 한 나라의 쓰임을 절제하는 데 있었다. 위로는 공부의 비용을 절약하고, 아래로는 결병의 권한을 억제하여 항시 족할만한 축적이 있도록 한다. 녹봉을 늘여 현사를 대하고, 군량을 더하여 무력을 기른다. 그리하여 외세를 막고 내부를 부강하게 하는 자료로 삼으려 하였다.²⁰⁾

『묘충록』에서 제시한 개혁안의 근거는 거의 고대의 경전과 역사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는 중국의 사상과 역사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에 토대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고대의 유습을 따르는 복고를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고대의 이상을 참고로 하되 그것을 응용하여 조선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재해석하여 만들어냄으로써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현실의 모순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혜안을 가지고 시대를 고민한 결과라고 하겠다. 여기에 고뇌하는 지성으로서의 그의 모습과 수준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그의 사상에서도 단순히 선학의 견해를 묵수한 것이 아니라 '心卽理'라는 자신만의 새로운 해석을 내린 것보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진상은 유형원의 『礪溪隨錄』에 실린 개혁안을 많이 참고하여 그로부터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의 주장이 너무 복고에 치우쳐 闊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시세와 요령을 참작하여 행하기 쉽고,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즉 개혁성은 훨씬 떨어지게 되었지만 현실 적

20) 『明美堂全集』 10. 畝忠錄序.(宣文出版社 影印本, 1984)

용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질 수 있었던 것이다.

유형원과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토지제도와 신분제도에 대한 개혁안이 없다는 사실이다. 전근대 사회체제의 두 축을 이루고 있던 토지제와 신분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이 없다는 것은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개량적인 개혁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그가 철저하게 전통적인 성리학자의 입장에 서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묘충록』은 국정과 관련된 근본을 크게 疆理原, 教選原, 分職原, 制祿原 등 네 개의 범주로 나누어 구분한 다음 각각에 해당되는 제반 규식을 제시하고 있다. 즉 疆理原 아래에는 度量式, 田等式, 田里式, 邑等式, 年等式, 穀等式, 田稅式, 上納式, 營需式, 雜稅式이 있었고, 教選原 아래에는 籍民式, 役民式, 建學式, 立師式, 養士式, 立教式, 入學式, 造士式, 試文式, 試規式, 試官式, 取士式, 兵籍式, 試武式, 武選式, 正兵試式, 別武士番式, 武士番式, 禁軍選式, 武科式, 雜科式, 五品入仕式 등이 있었다. 分職原 아래에는 職階品例, 仕路品例, 內官品例, 外官品例가 있었고, 制祿原 아래에는 上供歲會大略, 內官職俸假令, 散料假令, 掖庭頒料假令, 各司支下假令, 外官職俸散料假令, 一歲經用總會(各邑總會, 各道總會, 上納經用總會) 등이 있었다.

그리고 諸式 아래에는 각각 조례를 두어 규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부연 설명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各道假令’ 또는 ‘各年假令’이라 하여 해당 규식에 입각한 각도나 각년의 규정을 가상하여 제시해두고 있는 점도 큰 특징이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규식의 말미에 ‘附後說’이라 하여 자신의 생각을 첨부하여 보충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개혁안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의 범주나 규식의 순서대로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범주나 규식을 충분히 이해한 토대 위에서 주요한 개혁안을 요목별로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편이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 같다. 그 재구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의 상소문이

있다. 여기에는 그의 개혁에 대한 생각이 요목별로 잘 축약되어 있다. 이미 논급한 바와 같이 이 상소문은 ‘擬陳時弊仍進畝忠錄疏’로 실제로 올리지는 않은 擬疏이다. 여기서 그는 당시 국정의 폐단으로 官防之弊, 科擧之弊, 賦稅之弊, 軍政之弊, 胥吏之弊 등 5가지를 지적하고 각각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묘충록』은 국정 개혁안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까지를 자세하게 제시한 것이고, 상소는 핵심 개혁안을 추려 기본 열개를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묘충록』과 상소는 상호 결합하여 이해할 때 더욱 그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²¹⁾

3. 改革論의 내용과 의미

1) 官制 改革案

그는 관제 개혁을 통해 개혁 수행을 위한 조직의 틀을 새롭게 하고자 하였다. 그가 제시한 중앙 관제개혁안은 3개의 최고 기관을 두어 권한을 분산케 한 것이 큰 특징이었다. 內閣, 政府, 內營이 곧 그것이고, 각각의 장관을 太師, 領議政, 總衛使라 칭하였다. 이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상호 견제를 통하여 힘의 균형을 도모코자 한 것이 큰 골격을 이루고 있다.²²⁾

내각은 정 1품의 최고 기관인데, 기존의 經筵과 奎章閣을 합쳐 놓은 성격으로 국왕의 교육을 담당하고 또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참모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국왕과 관계된 부서를 일반 행정기관과 구분하여 별도의 독립된 부

21) 『寒洲全書』(아세아문화사, 1980)를 편찬할 때 畝忠錄의 序文과 擬陳時弊仍陳畝忠錄疏, 畝忠錄을 한 곳에 모아 실어놓음으로써 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이를 이용하였다.

22) 『畝忠錄』3, 分職原, 內官品例. 이하 중앙관제에 대한 설명도 여기에 의거하였다.

서로 만든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하겠다. 책임자로는 정 1품의 太師, 太傅, 太保를 두는데, 그 중 태사만 실직이고 나머지는 겸직이다. 그 아래 중 1품의 겸직인 少師, 少傅, 少保가 있고, 그 아래에 실직인 정 4품의 侍講을 위시하여 侍讀, 說經, 典經, 諮議 등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다.

정부는 일반 행정을 담당할 부서로 종래의 議政府와 같다. 다만 최고 책임자로 정 1품의 영의정만 두고, 좌의정과 우의정은 두지 않는다. 정부에 삼의정을 두지 않고 영의정만을 남겨둔 것에 대해 그는 송대 范祖禹의 건의를 참조한 것이라고 하면서 국정을 일관성 있게 담당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영의정 아래에는 贊成 2인, 參贊 2인, 舍人 1인, 檢詳 1인, 郎廳 3인을 둔다. 정부 아래에는 실제 행정을 분담하는 六曹가 정 2품아문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종래의 육조와 큰 차이는 없다.

내영은 기존의 都摠府와 宣傳廳을 합친 것으로 국왕 및 궁궐의 호위를 담당하고 나아가 나라 전체의 軍務를 총괄케 한 부서로 설정된 것이다. 최고 책임자는 정 1품의 총위사이고, 그 아래에 副使 1인, 行首宣傳 1인, 參上宣傳 14인, 從事 2인, 參下宣傳 15인이 있다. 이 내영의 존재는 武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었다. 내영은 현종대에 일시적으로 창설한 바 있었으나 중도에 폐지된 제도였는데,²³⁾ 이 때 이진상이 이의 복설을 주장하면서 기구의 성격을 약간 달리하여 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왕을 보좌하는 기구로서의 내각, 일반 행정을 총괄하는 기구로서의 정부, 군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의 내영을 둬으로써 명확하게 권한을 분산시키고 업무를 분담시켰다. 내각의 태사, 정부의 영의정, 내영의 총위사에 권력을 분점시킴으로써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부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적으로 지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높인 점도 높이 평가할

23) 『현종실록』 13. 12년 1월 경오.

수 있는 부문이다.

그 외 관제 개혁안의 특징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자와 관련한 부서로서 東宮을 설치하는데, 종 1품의 별도 이문으로서 종래의 世子侍講院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 격은 훨씬 높였다. 최고 책임자는 종 1품의 世子師로 그 이하 직제는 내각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되겠다.

홍문관과 사헌부를 정 2품이문으로 배치하여 두 부서의 위상을 높였으며, 특히 홍문관의 최고 책임자로 정 2품 대제학을 실직으로 삼은 것도 특징이다. 사간원은 폐지하였는데, 간언을 하는 것은 모든 관원의 권리이자 의무로 보았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관서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겸직을 많이 활용하면서 관원수를 줄인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관원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이 백폐의 근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冗官을 태출하여 관원수를 줄인 다음 남은 관원에 대해서는 녹봉을 올려 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관리 녹봉의 수준이 명과 비교하여 적음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 한 직책에 구임케 함으로써 책임 행정을 소신껏 펼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²⁴⁾

그리고 관직 제수와 관련하여 당시의 관습처럼 되어있던 사양하는 관례를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양하는 것을 아름다운 일로 간주하는 습속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면 堯舜, 孔孟이 있다고 해도 국정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하였다.²⁵⁾

한편 지방행정조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8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동일한데, 그 아래 하부 읍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5 등급으로 나누었다. 즉 營 - 州 - 府 - 郡 - 縣이 그것이다. 영은 각도의 留

24) 『寒洲集』 4, 擬陳時弊仍陳畝忠錄疏.

25) 『寒洲集』 4, 擬陳時弊仍陳畝忠錄疏.

營, 監營, 兵營이 있는 고을을 가리킨 것인데, 영으로 이름을 통일해서 명명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 점이다. 그 아래 주부군현은 종래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지이다.²⁶⁾

참고로 경상도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영이 3곳에 있는데, 감영 1곳, 병영 2곳이다. 주가 5곳, 부가 7곳, 군이 8곳, 현이 12곳으로 총 35개 읍으로 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실제 경상도에 71개 읍이²⁷⁾ 있었음을 감안하면 통폐합을 통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읍 수를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영 19곳, 주 20곳, 부 30곳, 군 40곳, 현 61곳으로 총 170개 읍으로 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당시 실제 전국의 총 읍수인 335개와²⁸⁾ 비교할 때 거의 절반 수준인 것이다. 이는 지방 수령과 관원 수를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여 국가의 재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되므로 결국 일반 백성들의 부담 경감으로 연결되는 주장이었던 것이다.

2) 敎育 및 科擧制 改革案

관제의 틀을 새로 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인물을 어떻게 선발하여 그 자리를 채울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 때에는 과도한 관료 희망자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함께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관료가 되지 못한 데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층을 줄이면서 이들을 자연스럽게 생산에 종사하는 쪽으로 유도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과는 관련을 가진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관료 선발은 교육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먼저 교육체계에

26) 『敵忠錄』 3, 分職原, 外官品例.

27) 『묘충록』이 작성된 시기인 1866년과 가장 가까운 시기인 1864년경에 만들어진 지리지인 金正浩의 『大東地志』(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6)를 참조한 수치이다.

28) 위와 같음.

대한 구상이 없을 수 없다. 그는 공교육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강화하는 방향에서 교육개혁안을 제시하였다. 학교는 지역과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5등급으로 나눌 것을 주장하였다. 지방의 경우는 塾→書院→鄉校→營學→太學 순으로 승급토록 되어있었고, 한양의 경우는 塾→書院→四學 外舍→四學 內舍→太學으로 승급하게 되어있었다. 상급 학교로의 승급 추천은 매년 정원의 1/10에 해당하는 수를 추천하게 하였다. 단 과거에 응시하고 있는 자나 재학기간이 2년 미만인 자는 제외토록 하는 제한을 두었다.²⁹⁾ 각급 학교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里에 설치된 塾이다. 속에는 8세 이상 입학케 하였는데, 20세가 되도록 다음 단계의 학교인 書院으로 올라가지 못한 자는 퇴출하는 규정을 마련해두었다. 정원은 따로 두지 않고 貴賤과 知愚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입학케 하였다. 일종의 의무적인 교육인 셈이었다. 학생은 幼學이라 칭하였고, 교육은 里正이 담당하게 하였다.³⁰⁾

다음은 坊에 설치된 書院이다. 서원에는 12세 이상 입학케 하였고, 30세가 되어도 다음 단계의 학교인 鄉校로 올라가지 못하면 퇴출시켰다. 학생 정원은 10인으로 하고, 역시 幼學이라 칭하였다.

다음은 각 邑에 설치된 鄉校이다. 향교에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고, 40세가 되도록 다음 단계로 진급하지 못한 이는 퇴출시켰다. 학생 정원은 고을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었는데, 영은 60명, 주는 50인, 부는 40인, 군은 30인, 현은 20인으로 하였다. 동급인 한양의 四學 外舍는 각 80인을 정원으로 하였다. 학생들은 秀士라 칭하였다.

다음은 縣에 설치된 黌學이다. 영학에는 18세 이상 입학케 하였고, 50세

29) 『欽忠錄』 2, 敎選原, 造士式.

30) 『欽忠錄』 2, 敎選原, 建學式·立師式·養士式·立教式·入學式·造士式. 이하 학교에 대한 설명도 이에 의거하였다.

가 되도록 다음 단계의 太學에 진학하지 못하는 자는 퇴출시켰다. 학생 정원은 道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었는데, 경기도는 60인, 충청도 80인, 경상도 100인, 전라도 80인, 강원도 40인, 황해도 40인, 평안도 60인, 함경도 40인으로 하였다. 동급 학교인 한양의 四學 內舍는 각 20인을 정원으로 하였다. 학생은 俊士라 칭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양에 설치된 太學이다. 태학에는 21세 이상 입학케 하였고, 60세가 넘도록 官界에 진출하지 못하는 자는 퇴출시켰다. 학생 정원은 200인이었는데, 학생은 進士라 칭하였다. 그 중에서 內閣으로 뽑혀 들어간 이를 選士라 하였다.

이상에서 서술한 학교의 단계와 학생의 칭호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地域名	里	坊	邑(漢陽)	道(漢陽)	國
學校名	塾	書院	鄉校 (四學 外舍)	營學 (四學 內舍)	太學
學生稱號	幼學	幼學	秀士	俊士	進士
科擧 應試 資格 基準			進士 初試	式年文科 初試	庭試, 謁聖試, 殿講試

그는 5단계의 학교를 교육의 기본 틀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단계별로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인원만을 상급 학교로 선발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 일정 수준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연령 이후에는 공교육 체계에서 자연스럽게 탈락시키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었다.

이와 같이 공교육 중심으로 교육의 체계화를 구상하였다는 점이 그의 개혁안의 주된 특징이라고 하겠다. 당시의 과다한 사설 교육기관에 대한 정비의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단계별로 자연스럽게 탈락시킴으

로써 자신의 능력 이상의 기대감을 가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관료선발 체계에 대한 그의 개혁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는 개혁을 주장하는 자는 모름지기 科規를 먼저 변통해야 한다고 하여 과거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인재 선발의 방법으로 흔히 거론되던 천거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천거제에 私情이 개입되면 과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과거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정을 저지른 자의 후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방안으로 부정을 예방할 것을 역설하였다. 특히 진사시의 경우에는 3시관제를 운영하여 역할을 순차적으로 분담케 하여 부정 방지책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³¹⁾

과거시험은 문신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진사시와 문과를 두었다. 진사시는 詩, 賦, 疑, 論 그리고 講을 시험과목으로 하였다.³²⁾ 선발인원은 먼저 진사시의 경우 진사초시는 秀士 이상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선발 인원은 총 1,200명이었는데, 한성부 200인, 경기 120인, 충청 160인, 경상 200인, 전라 160인, 강원 80인, 황해 80인, 평안 120인, 함경 80인으로 할당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단계인 진사 講試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600인을 선발하고, 이어 정식 진사시에서 그중 200인을 최종 선발토록 하였다.³³⁾ 그리고 진사는 나이순으로 태학에 입학시켰는데 125인으로 한정하였다.³⁴⁾

문과는 式年試, 庭試, 謁聖試, 殿講試 정도를 남겨두고, 나머지 增廣試, 別試, 應製試, 陞學試, 公都會試 등은 일체 혁파하기를 주장하였다.³⁵⁾ 節日製와 黃柑製는 施賞만 할 뿐이고, 전시에 바로 나아가는 특전은 주지 않도록

31) 『寒洲集』 4, 擬陳時弊仍陳啟忠錄疏.

32) 『啟忠錄』 2, 教選原, 試文式·試規式.

33) 『啟忠錄』 2, 教選原, 取士式.

34) 『啟忠錄』 2, 教選原, 取士式.

35) 『啟忠錄』 2, 教選原, 試規式.

할 것을 주장하였다.³⁶⁾ 이는 부정기시를 대부분 혁파함으로써 과거 합격자 인원을 상당히 줄이려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과는 종류에 따라 시험과목에 차이가 있었다. 식년문과의 경우 시험과목으로 表와 策, 그리고 講을 두었는데, 강보다는 표와 책에 비중을 더 두었다. 정시의 경우는 표와 책으로 선발하였고, 알성시는 賦로 뽑게 하였으며, 전강시의 경우는 삼경 위주의 講經으로 선발하였다.³⁷⁾

식년문과의 초시는 嬴學이나 四學 內舍에 다니는 俊士 이상에게 응시자격을 주게 하였다. 선발인원은 도별로 할당하였는데, 한성 50인, 경기 30인, 충청 40인, 경상 50인, 전라 40인, 강원 20인, 황해 20인, 평안 30인, 함경 20인으로 총 300인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과 講試에서 150인을 선발하였고, 이어 정식 문과시에서 35인을 최종 선발토록 하였다.

한편 정시와 알성시, 전강시는 太學에 다니는 進士 이상에게 응시 자격을 주게 하였다. 정시 문과는 큰 경사의 경우는 10인, 보통 경사인 경우는 5인을 선발토록 하였다. 알성시의 선발인원은 3인이었고, 춘추로 열리는 전강시에서는 2명을 선발토록 하였다. 문과 합격자는 나이순으로 내각으로 승급시켰는데 40인에 한정시킬 것을 주장하였다.³⁸⁾

한편 무과의 경우는 그 합격자 수를 엄격하게 낮추는 데 주력하면서 한편으로는 문과에 종속적인 지위에 놓이도록 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과 시험과목의 강경과 관련하여 대사성, 대제학 등의 개입을 주장하고 있고, 시험도 문과 끝난 뒤에 무과 강경을 하도록 하여 무과의 종속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무과 시험을 문과 시험에 부수적인 형태로 치루는 것은 당·송과 고려에서 행했던 형태로 이를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36) 『寒洲集』 4, 擬陳時弊仍陳欽忠錄疏.

37) 『欽忠錄』 2, 教選原, 試規式.

38) 『欽忠錄』 2, 教選原, 取士式.

무과의 종류는 세 종류를 두었다. 먼저 禁軍都試武科인데, 5영에서 도합 100인을 뽑도록 하고 있다. 다음이 式年武科인데, 초시에서 50인을 뽑고 본시에서 25인을 최종 선발토록 하였다. 식년무과의 경우 문과강이 끝난 후 대사성이 금군에 입직하여 삼경 중 하나를 시험하여 50인을 선발케 하였다. 그리고 식년문과가 모두 끝난 후 대제학이 그 50인을 武略策으로서 시험케 하였다.³⁹⁾ 마지막으로 庭試武科인데, 큰 경사일 때 8인, 보통 경사일 때 4인을 뽑도록 하였다. 정시에는 입직한 금군만을 대상으로 하여 武經을 강경케 하고 또 3경 중 하나를 택하여 강경케 하였다.⁴⁰⁾ 무과 역시 나이순으로 내각에 들게 하되, 30인에 한정토록 하였다.⁴¹⁾

雜科는 총 8개 과를 두었다. 天文學, 地理學, 醫學, 卜筮學, 籌學, 律學, 樂學, 譯學 등이고, 선발인원은 각 과별로 5인이어서 총 40인이었다.

교육과 과거에 대한 그의 개혁안에 따르면 관료로 진입하는 길은 위에서 논급한 문과, 무과, 잡과를 통하는 것 외에 選과 薦이 더하여져 총 5가지의 유형이 있었다. 그는 5가지 유형을 중요도에 따라 選, 文科, 薦, 武科, 雜科 순으로 들었다.

첫째, 선이다. 내각 태사가 선사의 명부를 받아 4番으로 나누어 돌아가며 경연에 들어 강설에 참가하고 익히게 한다. 1년을 기다려 10인을 초계하여 5번으로 나누어 殿中에 입직케 하고, 다시 일년이 지나면 銓曹로 옮겨 자리가 날 때 출사케 한다.

둘째, 문과이다. 내각 태사가 문과의 명부를 받아 역시 차례로 돌아가 경연에 입시케 하여 奏讀에 참가하고 익히게 한다. 일년을 기다려 40인을 초계하여 5번으로 나누어 殿中에 입직케 하고, 또 일년이 지나면 전조로 옮겨 자

39) 『敵忠錄』 2, 敎選原, 武科式.

40) 『敵忠錄』 2, 敎選原, 武科式.

41) 『敵忠錄』 2, 敎選原, 武科式.

리가 날 때 출사케 한다.

셋째 천이다. 태학의 진사는 하급 학교에서 뽑혀 온 자가 50인이고, 음으로 뽑혀온 자가 25인이며, 진사시 과거로 뽑힌 자가 125인으로 도합 200인이다. 매년 말 그 명부를 내영으로 올린다. 총위사는 5번으로 나누어 殿前에 입직케 하여 고문에 대비케 하고, 제향이 있는 즉 집사로 참여케 한다. 실제 근무일이 384일이 되고 과실이 없는 자는 모두 내각으로 추천하여 올린다. 태사 역시 차례로 경연에 입시하여 강론을 參聽케 한다. 일년을 기다려 20인을 뽑아 5번으로 나누어 殿中에 입직케 하고, 다시 일년이 지나면 전조로 보내어 직과에 따라 출사케 한다.

넷째 무과이다. 내각 태사는 무과의 명부를 받아 역시 돌아가며 경연에 입시하여 奏對를 참관케 한다. 1년을 기다려 30인을 5번으로 나누어 殿中에 입직케 하고 다시 1년이 지난 후 전조로 보내 직과에 따라 출사케 한다. 都試科는 별도로 5영에서 순서대로 승진시킨다. 이와 별도로 총위사는 금군 100인을 뽑아 5번으로 나누어 殿前을 입직케 하고 사령에 대비케 한다. 실제 근무일수가 384일이 되고 과실이 없는 자는 내각으로 추천한다.

다섯째, 잡과이다. 내각 태사는 여러 잡과의 추천 명부를 받아 參驗考試하고, 1년을 기다려 5번으로 나누어 전중에 입직케 하고 다시 일년이 지난 뒤 전조로 옮겨 직과에 따라 출사케 한다.⁴²⁾

이상과 같이 문과·무과·잡과와 같은 과거를 관료 선발의 중심 원칙으로 하되, 그 외 選이나 薦을 출사의 중요한 통로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는 관료에의 출사를 교육과 연관이킴으로써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그의 개혁안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과거라고 하더라도 역시 학교 교육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42) 『敬忠錄』 2, 教選原, 五品入仕式.

3) 軍政 改革案

군정 개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군인의 확보와 운영 재원의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군인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권력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있고, 군인에게 적절한 혜택을 줌으로써 스스로 자원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다. 이진상이 구상한 것은 당연히 후자의 방안이었다.

먼저 그는 무예의 수준에 따라 군인층의 등급을 5단계로 설정하였다. 즉 壯丁 → 正兵 → 別武士 → 武士 → 甲士의 순으로 된 등급이 그것이다. 兵籍에 오른 자를 장정, 장정 중에서 선발되어 邑鎭을 지키는 자를 정병, 정병 중에서 선발되어 營鎭에 번상하는 자를 별무사, 별무사 중에서 선발되어 한양의 五營에 번상하는 자를 무사, 무사 중에서 특히 內營(禁軍)에 뽑힌 자를 갑사라고 하였다.⁴³⁾

그는 軍을 대함을 士를 대함과 다름없이 하여 군인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읍에 軍籍을 두되 儒籍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군적에 오르는 것을 拔身の 階로 삼을 수 있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군적에 편입되면 비록 編戶之氓에게라도 利祿의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들이 弓箭을 연습할 때는 반드시 糜料를 지급해야 하고, 한양에 시험보러 갈 때는 반드시 路費를 지급하는 등의 우대책으로 군을 대접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그는 군인층의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우대책으로써 군인층의 自願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군인층의 확보가 의무로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여 충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사의 길을 희망하도록 만들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였고, 그를 위해서는 막대한 물적 자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전 인민을 대상으로 役布(役錢)를 거두는 방안을 제시하

43) 『敵忠錄』 2, 教選原, 武選式.

였다. 장정 1인당 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두었다. 매년 幼學, 業武, 業農, 臧獲은 役錢 1兩, 工匠, 商賈는 役布 1疋, 庖丁은 牛皮 1領, 僧尼·巫覡·倡優·游手는 役布 4疋을 부과하였다.⁴⁴⁾ 나이 60세이면 면역해 주었고, 80세 이상이면 1자에게 면역의 혜택을 주었다. 단 商賈는 70세에야 면역케 하였고, 別籍者는 90세에야 면역케 하였다.⁴⁵⁾ 한편 역포를 내지 않아도 되는 無役 또는 免役의 대상이 있었는데, 官僚·吏胥·皂隸 등 관청에 복무하고 있는 층, 秀才·俊士·進士·選士 등 문인층, 正兵·別武士·武士·甲士 등 무인층이 등이었다.⁴⁶⁾ 이렇듯 국가의 업무에 복무하거나 학업에 종사하고 있는 문인층, 그리고 그에 대응되는 무인층에 대한 배려였다고 하겠다.

군인층은 일단 장정에 선발되어 兵籍에 오르면 役布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무사에 선발되면 1년에 米 22석⁴⁷⁾이 지급되었고, 감사에 오르면 1년에 米 26석 4두가 지급되었다. 나아가 오영의 무사나 금군의 감사에 이르면 관료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단계별로 혜택을 줌으로써 군인으로의 自願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의 군정 개혁안의 핵심이 있다.

아래에서는 등급별로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병적에 장정으로 오를 수 있었던 층은 士, 농공상업 종사자, 노비를 막론하고 희망하는 자로서 나이 15세 이상으로 신체가 장건하고 무예에 능한 자 중에서 선발하였다. 그 희망자 중에서 각리의 里正이 20인을 뽑아 坊正에게 보고하면, 방정은 一坊의 명단을 郡縣으로 올리고, 각 군현의 수령들은 병적을 만들어 조정에 보고하게 하였다. 따라서 군현별로 병적이 작성되어 관리되는데,

44) 『欽忠錄』 2, 教選原, 役民式.

45) 『欽忠錄』 2, 教選原, 役民式, 條例.

46) 『欽忠錄』 2, 教選原, 役民式.

47) 이진상은 그의 개혁안에서 1석을 15두가 아니라 10두로 상정하고 있다. 『欽忠錄』 1, 疆理原, 度量式.

각 군현별로 병적에 수록되는 정원은 고을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어 營 6,000명, 州 5,000명, 府 4,000명, 郡 3,000명, 縣 2,000명을 정원으로 하였다.⁴⁸⁾ 이 때 무예를 시험하는 데는 弓手, 砲手, 刀手, 槍手로 나누고 武經諸書를 보되, 弓·砲·刀·槍 네 가지 기예는 그 중 하나를 정밀하게 연습하는 것을 최고로 쳤고, 여러 가지에 두루 통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⁴⁹⁾

다음 각 군현을 지키는 정병이다. 정병의 정수는 영이 240인, 주에 200인, 부에 160인, 군에 120인, 현에 100인으로 하였다. 매 식년 3월 하순에 수령이 그 고을의 병적을 살피고 武技를 시험하여 정통한 자를 취하여 武經으로 시험하여 각 순서를 매기고 정해진 수만큼의 정병으로 삼도록 하였다. 정해진 수의 반 정도를 별도의 장부에 정리해두었다가 궐석이 생기면 차례로 보충케 하였다. 그리고 정병은 2番으로 나누어 6개월은 집에서 농사짓게 하고 6개월은 진에 머물게 하였다.⁵⁰⁾

다음은 각 영에 배치된 별무사이다. 별무사는 유수영 260인, 관찰영 260인, 통어영 760인,⁵¹⁾ 통제영 800인, 병사영 260인을 정원으로 하였는데, 매 식년의 전년 10월 중순에 각 읍 수령이 정병을 시험하여 별무사를 뽑도록 하였다. 고을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어 영에서는 24인, 주는 20인, 부는 16인, 군은 12인, 현은 10인을 뽑아 명단을 올리게 하였다. 각 영의 별무사는 역시 2번으로 나누어 6개월은 집에서 농사짓게 하고, 6개월은 영에 부방케 하였다.⁵²⁾

도별로 배치되는 상황을 보면 경기도는 한강 이남 군현의 별무사는 화성에, 한강 이북 군현의 별무사는 개성에 배치하였다. 충청, 전라, 평안, 함경도의 제읍은 각각 반으로 나누어 반은 관찰영으로, 반은 병사영으로 올렸다.

48) 『敵忠錄』 2, 教選原, 兵籍式.

49) 『敵忠錄』 2, 教選原, 試武式.

50) 『敵忠錄』 2, 教選原, 正兵試式.

51) 통어영은 별무사와 마군을 500인 취하고, 수군을 260인 취하도록 하였다.

52) 『敵忠錄』 2, 教選原, 別武士番式.

경상도 제읍은 3등분하여 1/3은 관찰영으로 보내고, 나머지 2/3 중에서 좌도의 제읍은 좌병영, 우도의 제읍은 우병영으로 각각 보내었다. 강원, 황해도 의 제읍은 3등분으로 나누어 1/3은 합하여 황해도 병사영으로 보내고, 나머지 2/3는 해당 도의 관찰영으로 보내게 하였다.⁵³⁾

수군 지역에는 따로 水軍別武士를 두었다. 諸道 水使, 僉使, 萬戶 등이 관찰하는 수군의 경우는 각 소관의 노군의 武技를 시험하여 수군별무사를 충정토록 하였다. 식년의 전년에 별무사를 시취하되, 하삼도는 통제영으로 보내고, 경기·황해도는 강화영으로 보내고, 강원·평안·함경도는 통어영으로 보내게 하였다.⁵⁴⁾

다음은 중앙 5영에 소속된 무사이다. 무사는 5영에 각각 2000명씩 소속시켜 총 1만명으로 구성되었다. 매 식년 전년 8월 중순에 각 군현에서 정병을 시험하여 상변할 무사를 선발한다. 군현의 크기에 따라 차등있게 할당하였는데, 영은 60인, 주는 50인, 부는 40인, 군은 30인, 현은 20인, 한성 4부는 각 50인씩 5영으로 올리게 하였다. 식년 2월 하순에 5영의 장이 각 주부군현에서 올린 무사의 장부를 보고 각 1/5씩을 취하게 하였다. 무사는 모두 長番으로 하였다.⁵⁵⁾ 營軍隊長에게는 미포를 지급하는데 미로 환산하면 연간 미 24석 6두가 지급되게 하였고, 일반 영군에게는 연간 미 22석 8두를 지급토록 하였다.⁵⁶⁾

다음은 금군이다. 금군은 5영에 각 500명씩 두었다. 금군은 매년 말에 내외 각 영에서 무사와 별무사를 시험하여 총위사에게 올리게 하였다. 5영에서는 각 320인씩, 통어영은 120인, 통제영은 128인, 유수영·관찰영·병사영은 각 40인씩 올리게 하였다. 총위사는 각 영에서 바친 수를 취합하여 금

53) 『敵忠錄』 2, 敎選原, 別武士番式.

54) 『敵忠錄』 2, 敎選原, 別武士番式.

55) 『敵忠錄』 2, 敎選原, 武士番式.

56) 『敵忠錄』 4, 制祿原, 散料假令.

군으로 삼는다. 매년 말 총위사는 금군 중 뛰어난 자 100명을 취하여 갑사라 하여 殿前에 숙직케 하고, 나머지는 5번으로 나누어 畿內를 巡行하고 각 문을 把守케 한다.⁵⁷⁾ 禁軍隊長에게는 매년 미 21석 6두, 포 11필로 모두 미로 환산하면⁵⁸⁾ 연간 미 28석 2두가 지급되도록 하였고, 일반 금군에게는 연간 미 26석 4두가 지급되도록 하였다.⁵⁹⁾

이상에서 살펴본 그의 군정 개혁안은 전 인민을 대상으로 役布(役錢)를 거둘 것을 주장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역 부담을 공평하게 지운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의 개혁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병적에 이름이 오른 장정에 게 경제적 혜택을 준다는 점과 군인을 장차 발신의 계제로 삼을 수 있게 한 점도 군인층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서 탁견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賦稅制 改革案

이진상이 국정 개혁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으로 지적한 것은 백성들의 賦稅 부담 경감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國家의 安危가 生民의 休戚에 달렸고, 생민의 休戚은 賦稅의 輕重에 달려있다”⁶⁰⁾라고 하여 부세문제를 국가의 안위 차원에서 보았다. 그가 말하는 부세는 당시 사람들이 감당하여야 하였던 각종 부담을 통칭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일단 이진상은 남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인일 경우 지주에게 바쳐야 하는 지대와 국가에 부담해야 하는 전세의 적정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수확의 3/10은 지대, 1/10은 公稅로 내고, 나머지 6/10을 경작의 대가로 가져가는 방식이었다.⁶¹⁾ 만약 소작농이 아니고 자신의 토지를 소유한

57) 『欽忠錄』 2, 教選原, 禁軍選式.

58) 포 1필은 미 6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59) 『欽忠錄』 4, 制祿原, 散料假令.

60) 『寒洲集』 4, 擬陳時弊仍陳欽忠錄疏.

자작농일 경우에는 公稅 1/10를 제외한 9/10를 자신이 가진다는 의미이다.

지대는 수확의 3/10이 되는데, 대부분 지주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실제보다는 줄어든 액수이겠는데, 그렇게 용납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지주에게는 감당할만한 양보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당시에도 사리를 좀 아는 양심적인 지주의 경우 수확의 1/3정도를 가져가서 소작농들의 마음에 부응한 지주들이 있다고 하는 점을⁶²⁾ 감안할 때 지주에게도 전혀 무리한 액수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액수는 경험에서 터득된 액수로서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실적인 타협책을 마련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6/10의 수입이 소작인에게 돌아간다면 소작농의 생계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면서, 그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부세 개혁안에서 보이는 수확에 대한 분배의 비율은 국가의 많은 양보와 지주의 약간의 양보를 전제로 하여 일반 백성들의 삶의 보장을 부여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국가 수입의 축소에 있었다. 公稅라 표현한 수확의 1/10에는 전세 뿐 아니라 토지에 부과되었던 大同米를 위시한 각종 부담 모두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당시에 실제 부과되었던 세금 액보다는 경감된 것이었다.

국가 수입의 축소는 다른 방법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농사는 지으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는 隱結을 색출하여 철저히 세금을 거두는 것이었다. 양전사업의 철저한 실시를 주장한 것이 그를 위한 조처였다고 하겠다. 이것만 된다면 국가의 수입 총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2년을 기한으로 하여 양전사업을 완성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打量을

61) 『欽忠錄』 1, 疆理原, 穀等式.

62) 『欽忠錄』 1, 疆理原, 穀等式 附後說.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비리를 행한 이들에 대해서는 주살할 것을 주장하였다.⁶³⁾ 그 만큼 절박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전이 일단 완성된 이후에는 3년에 한번씩 유고가 있는 진황지나 새로 개간된 토지를 계통을 밟아 보고케 하여⁶⁴⁾ 충실한 상태로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그리고 수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邑의 坊 단위로 1명의 鄕吏, 1명의 捕校, 2명의 頭民을 뽑아 답험 업무를 담당케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⁶⁵⁾ 또 근본적으로 그 양전사업의 효율성과 수세의 편의를 위해 토지 측량의 단위를 結負法에서 頃畝法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계산법에 의하면 1경의 토지는 약 40마지기 정도의 넓이가 되는데, 비옥도에 따라 토지의 등급을 정 1등전, 종1등전, 정2등전 …… 종9등전으로 총 18등급으로 나누었다.⁶⁶⁾ 그리고 각 등급별로 예상 수확량을 책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각 등급당 租 40두씩 차감이 되도록 차등있게 제시하였다.

등급	수확량	비고	등급	수확량	비고
정1등전	租4,000두	水田의 基準田	종5등전	租1,000두	
종1등전	租3,600두		정6등전	租800두	沿浦近峽 旱田의 基準田
정2등전	租3,200두		종6등전	租600두	
종2등전	租2,800두		정7등전	租400두	
정3등전	租2,400두		종7등전	租360두	
종3등전	租2,000두		정8등전	租320두	
정4등전	租1,600두	旱田의 基準田	종8등전	租280두	
종4등전	租1,400두		정9등전	租240두	
정5등전	租1,200두		종9등전	租200두	

그는 수전의 경우는 정1등전에서 시작하지만, 한전의 경우는 정4등전에서

63) 『寒洲集』 4, 擬陳時弊仍陳畝忠錄疏.

64) 『畝忠錄』 1, 疆理原, 田里式, 條例.

65) 『寒洲集』 4, 擬陳時弊仍陳畝忠錄疏.

66) 『畝忠錄』 1, 疆理原, 度量式·田等式.

시작하며, 그보다 더 못한 沿浦近峽의 한전은 정6등전에서 시작한다고 하여 수전과 한전의 수확량의 차이를 감안하는⁶⁷⁾ 등 현실성을 더하였다.

또한 여기에 풍흉에 따른 수확량의 차이도 감안하였다. 그는 풍흉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각각 上年, 中年, 下年, 小損年, 中損年, 大損年 등이었다. 그에 따르면 평년작일 경우 하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위 표에서 정1등전의 경우 수확량으로 제시한 4,000두는 상년에 해당될 때를 상정한 액수이고, 중년일 경우는 종1등전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고, 하년일 경우는 정2등전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삼으며, 소손년일 때는 종2등전의 수확량, 중손년일 경우는 정3등전의 수확량, 대손년일 경우는 종3등전의 수확량을 각각 기준으로 삼게 하였다.⁶⁸⁾

또한 그 외에 별도로 下災田, 中災田, 上災田의 구분을 두었는데, 하재전은 재해의 규모가 1/3이하인 경우, 중재전은 재해의 규모가 1/2정도일 경우, 상재전은 재해의 규모가 2/3이상인 경우로 상정하였다. 그리하여 하재전으로 판정된 경우는 본래 등급의 1/2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간주하였고, 중재전으로 판정된 경우는 본래 등급의 1/3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간주하였으며, 상재전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세금을 면해주는 것으로 상정하였다.⁶⁹⁾

그러나 비옥도에 따라 전국의 토지를 18등급으로까지 세분화하는 것의 현실성과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여지가 많다. 역사적으로 토지의 비옥도는 3등급으로 나누었거나 6등급으로 나누었고, 18등급과 같이 그렇게 세밀하게 나눈 적이 없는 것이다. 이는 세밀하게 나누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비현실적이었음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야 세분화되면 될수록 공정하기는 하겠지만 실제 그것을 정확하게 짚 잣대가 명확하지 않

67) 『欽忠錄』 1, 疆理原, 田等式, 條例.

68) 『欽忠錄』 1, 疆理原, 年等式.

69) 『欽忠錄』 1, 疆理原, 年等式.

왔기 때문이었고, 또 세분화되면 될수록 사사로움이 개입될 여지가 그만큼 더 커질 것을 예견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18등급으로의 구분은 이상에 치우친 부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5) 吏胥制 改革案

부세제나 균역제 등을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개혁한다고 당시 사회의 모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진상은 國制之壞, 軍額之耗, 國計之縮, 民隱之切 이 모든 것이 서리배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바뀐 제도를 실제 담당할 서리나 향리들이 양심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실무를 담당할 자들인 서리 및 향리들로 하여금 부정의 유혹을 떨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던 것이다.

주지하듯이 조선조의 향리들은 복무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받는 녹봉이 없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들은 관청에 복무하여야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겨를도 없을 뿐 아니라 상업이나 공업에 종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속이고 농간을 부리는 부정의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엄한 형벌과 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여 부정을 막으려 해도 백출하는 奸計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의식을 마련할 길을 열어준 다음 부정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조처를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향리들의 복무의 대가로 국가에서 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⁷⁰⁾ 그리고 長官된 자의 감독 또한 강조하였다. 장관된 사람이 淸高로 자처하지 말고 직접

70) 『寒洲集』 4, 擬陳時弊仍陳畝忠錄疏.

문서 장부를 보고, 서리들에게 위임하지 말고 몸소 출납을 살피며, 貢物 稅納에 있어 뇌물을 받고 點退하는 폐습을 통렬히 깨며, 訟事를 듣고 판단하는데 사사로움이 낀 흔적을 잘 살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南冥 曹植이 胥吏亡國論을 제기한 이래⁷¹⁾ 누차 지적되던 문제였으나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되어오던 것이었다. 이 때의 이진상도 같은 연장선 상에서 조선조 서리제의 제도적 허점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이진상의 『묘충록』의 분석을 통해 그의 국정개혁론을 살펴보았다. 그는 유교 경전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자신의 경험을 참고하여 개혁안을 구상하였다. 그의 개혁안은 토지제도와 신분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안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만큼 이상에 치우치지 않고 되도록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관제 개혁론과 관련하여 그가 강조한 것은 필요 없는 관료의 수를 줄임으로써 국가 재정의 지출을 줄이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정의 핵심 관서로 내각, 정부, 내영 등 3개 관서를 상정하여 업무를 적절하게 분장하면서 책임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의 경우는 군현의 재조정을 통하여 수령의 수를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결과적으로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교육과 과거제의 개혁에서는 공교육을 5단계로 나누어 등급별로 시행함으

71) 『선조실록』 2, 원년 5월 26일 을해.

로써 교육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교육을 관료 선발과 연계시켜 공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 합격자의 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관료의 수급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이기도 하고, 관료 후보군을 최대한 줄여 사회 불만 요인을 원천적으로 줄이면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이를 늘임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토대로 삼고자한 것이었다.

군정 관련 개혁안에서는 모든 역 부담을 사회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원칙을 세워 개혁안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확보한 재원을 기반으로 하여 군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줌으로써 군인을 自願하게 하는 구조를 상정하였다. 그러한 체제 하에서 군사 방어나 군정 운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혁코자 한 것이었다.

부세의 경감은 당시 시대적 과제였다. 이를 위해 그는 세금은 수확의 1/10, 지대는 수확의 3/10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지주로부터의 약간의 양보를 전제로 한 다음, 국가 세금 감소분은 은결에 대한 철저한 과세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서리들이 중간에서 부리는 농간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서리에게 녹봉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부정의 유혹에 스스로 빠지지 않도록 할 것과 수령이 서리배들을 철저히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의 개혁안은 조정에 알려지지도 못한 채 묻히고 말았고, 이후 근대적인 개혁이 수행되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빛을 발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조선 성리학의 마지막 불꽃이었으며, 시대를 고민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학자였다. 그의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과 현실에 대한 대응 자세는 그의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의 제자 중에는 현실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이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李震相, 『寒洲全書』(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80)

柳馨遠, 『磻溪隨錄』

李建昌, 『明美堂全集』(宣文出版社 影印本, 1984)

金正浩, 『大東地志』(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76)

朱熹, 『朱子大全』(保景文化社 影印本, 1984)

강대걸, 「한주 이진상의 이기설소고」, 『북악논총』 5, 1987.

권대웅, 「한말 한주학파의 계몽운동」, 『대동문화연구』 38, 2001.

권오영, 「19세기 강우학자들의 학문동향」, 『남명학연구』 11, 2001.

금장태, 「퇴계와 한주의 신개념 : 성학십도 제6 심통성정도에 관한 한주의 해석과 관련 하여」, 『퇴계학보』 54, 1987.

금장태, 「퇴계학파의 학문 「21」 -한주 이진상의 성리학과 심즉리설-」, 『퇴계학보』 102, 1999.

김도형, 「한말.일제초기의 변혁운동과 성주지방 지배층의 동향」, 『한국학논집』 18, 1991

김도형, 「한주학파의 형성과 현실인식」, 『대동문화연구』 38, 2001.

송찬식, 「조선조말 주리파의 인식논리 - 한주 이진상의 사상을 중심으로 -」, 『한국학보』 9, 1977.

송찬식, 「한주전서 해제」, 『한국학논총』 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2.

송찬식, 「한주 이진상의 이기론 연구」, 『한국사학』 5, 1983.

이동희, 「한주학파의 퇴계 성리학 계승」, 『한국학논집』 26. 1999.

이윤갑, 「19세기 후반 경상도 성주지방의 농민운동」, 『손보기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1988.

이윤갑, 「조선후기의 사회변동과 지배층의 동향」, 『한국학논집』 18, 1991.

이종우, 「이진상 심즉리설의 연원적 고찰」, 『동양철학연구』 34, 2003.

이종우, 「한국유학사 분류방법으로서의 주리, 주기 개념에 관한 비판적 연구 - 이진상

- 학파와 전우학파의 논쟁과 관련하여-」, 『동양철학연구』 36, 2004.
- 이종우, 「이진상학파와 전우학파의 지각설 논쟁」, 『동양철학연구』 37, 2004.
- 이형성, 「한주 이진상의 심성론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2, 1998.
- 이형성, 「이진상의 성리설에 있어서 주재성에 관한 일고찰 : 이심사심론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19, 1998.
- 이형성, 「이진상 철학사상연구 서설 -사상형성 배경과 저술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13, 2001.
- 이형성, 「이진상 성리설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사상과 문화』 15, 2002.
- 이형성, 「한주 이진상의 심통성정론에 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15, 2002.
- 이형성, 「한주 이진상의 이철학 전개와 위상」, 『한국사상과 문화』 17, 2002.
- 이형성, 「한주 이진상의 '이지품수'로서의 성론 고찰」, 『한국사상과 문화』 19, 2003.
- 홍원식, 「한주학파의 공자교 운동」, 『한국학론집』 26, 1999.
- 홍원식, 「이진상의 철학사상과 그의 후예들」, 『동양학』 29, 1999.
- 홍원식, 「퇴계학의 남전과 한주학파」, 『한국의 철학』 30, 2001.
- 山内弘一, 「이진상의 심즉리설과 영남학파」, 『이우성정년퇴직기념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 상, 1990.

Abstract

Lee Jin-sang's theory about an administrative reform through
his work *Myochoongrok*(敵忠錄)

Woo, In-Soo

Hanju(寒洲) Lee Jin-sang(李震相) was a leading figure of Confucian scholars in Youngnam provin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He didn't purely keep to Lee Hwang(李滉)'s theory, but he added his own theory to it. That's why he was called a such scholar. He cultivated so many scholars called Hanju School(寒洲學派) that he became a prominent figure of Confucian scholars in Youngnam province.

Lee Jin-sang and his school drew much attention in the academic world from early on. He directed much attention of history and philosophy academia. He was chiefly examined about his study on Shimjeuklee(心卽理), which equates human mentality with natural laws, and the principle of human nature and natural laws, a scholastic mantle and activities of Hanju school, and his administrative reform theory.

In view of the results so far achieved in-depth research to Lee Jin-sang's theory and his school we could get the point of his theory about a scholastic mantle and his philosophy. But his social and political activities didn't draw much attention.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horoughly examine his reform bill through his work *Myochoongrok* and take a closer look at his cognizance of reality.

He formulated an administrative reform theory on the basis of his understanding of Confucian scriptures and history. His administrative reform bills had weak points in the land system and the status system. But his reform bills had strong points in realistic possibilities. The following were among realistic possibilities.

First, he insisted the reduction of excessive government officials in order to cut down the national expenses in a way of administrative

reform bills. Second, in a reform way of education an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he affirmed that the education system would be divide into five grades to activate public education. Third, in a reform way of military service he said positively that military service should be spreaded to all social classes so as to gather the source of revenue for the government renovation. Fourth, he proposed to assess a tax in a rate of one tenth on crop and three tenth on land. That's why he intended to reduce the secondary tax and to earmark insufficient tax as a tax for veiled land. Fifth, he emphasized that the government blocked the intrigue of the deputy official to carry out the government reform successively.

Unfortunately, his reform bills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from the government in comparison with modern reform bills in those days. But it is quite clear that he was a scholar of the highest attainments in metaphysics during Joseon Dynasty.

Key Word

Lee Jin-sang, Hanju School, *Myochoongrok*(敎忠錄), reform bill, reform theory, government reform, Youngnam Namin party, Sung-ju